

산학협력단 정관

2008.09.0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산학협력 교육과 연구 및 사업을 촉진,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49-11,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본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사항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기본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의 출연금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6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등

제7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의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법률에 의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또는 계약학과·학부의 설치·운영에 따른 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 및 실험·실습 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8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본교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9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0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제12조(회계기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 하되, 필요시 본교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회계연도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14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15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필요 시 감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③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하부조직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임용 및 파견) ① 산학협력단에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 ③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제 1 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비밀유지의무) 본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보상금) ①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 1 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제24조(해산) ①산학협력단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④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운영규정)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법 및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발생은 관할 법원 혹은 등기소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교와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